

청주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나1419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H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권우상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6. 18.

제1 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8가단1150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 2018. 3. 8.자 지상권설정계약, 2018. 4.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 2018.

8.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8. 3. 8. 접수 제45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501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8. 4. 12. 접수 제72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등기소 2018. 8. 9. 접수 제148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1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당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병렬, 판사 김환권, 판사 전보람

별지

목 록

1. 충북 피산군 J 답 738㎡
2. 충북 피산군 K 답 261㎡
3. 충북 피산군 L 답 26㎡
4. 충북 피산군 M 답 641㎡
5. 충북 피산군 N 답 837㎡
6. 충북 피산군 O 답 91㎡
7. 충북 피산군 P 답 118㎡ 끝.